

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

(최민희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0939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6. 19.

발 의 자 : 최민희 · 김 현 · 허성무
채현일 · 박민규 · 이원택
김현정 · 박해철 · 전재수
최혁진 · 모경종 · 권향엽
정동영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2026년 1월 22일 시행을 앞둔 「디지털포용법」은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차별이나 배제 없이 지능정보기술의 혜택을 고르게 누릴 수 있도록 경제적·사회적·문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며, 디지털취약계층의 접근성 개선과 사회참여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.

그러나 고령층, 장애인 등 디지털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근거나 보호조치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침해사고 발생 시 피해를 예방하거나 확산방지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그 시행 전에 입법적 보완이 필요한 실정임.

이에 디지털취약계층의 침해사고 대응 지원에 관한 근거조항을 신설하고 기본계획에 관련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, 침해사고 발생 시 이들이 차별되거나 소외되지 않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

임(안 제8조제3항제5호, 제25조의2 신설).

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

법률 제20672호 디지털포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3항제5호부터 제15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16호까지로 하고,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침해사고(이하 “침해사고”라 한다) 발생 시 디지털 취약계층의 대응 지원에 관한 사항

제4장에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5조의2(침해사고 대응 지원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침해사고 발생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디지털취약계층의 침해사고 대응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침해사고 대응 지원에 관한 적용례)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법률 제20672호 디지털포용법 제8조(디지털포용 기본계획) ① · ② (생 략)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 1. ~ 4. (생 략) <u><신 설></u> 5. ~ 15. (생 략) ④ · ⑤ (생 략) <u><신 설></u>	법률 제20672호 디지털포용법 제8조(디지털포용 기본계획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-----. 1. ~ 4. (현행과 같음) 5.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침해 사고(이하 “침해사고”라 한 다) 발생 시 디지털취약계층 의 대응 지원에 관한 사항 6. ~ 16. (현행 제5호부터 제1 5호까지와 같음) ④ · ⑤ (현행과 같음) <u>제25조의2(침해사고 대응 지원)</u> <u>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침해사</u> <u>고 발생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</u> <u>는 바에 따라 디지털취약계층</u> <u>의 침해사고 대응에 필요한 지</u> <u>원을 하여야 한다.</u>